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007
----------	------

2025년 9월 3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8월 11일, 한신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: 2025년 8월 14일

다. 상정일자: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5년 9월 3일 상정, 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한신 의원]

#### 가. 제안이유

-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-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상위법에 따라 요청하도록 규정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1) “피학대동물”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).

- 2)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함(안 제26조 신설).
- 3) 동물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요청하도록 규정함(안 제27조 신설).

### 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: 「동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‘동물보호정보시스템’의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반려동물 양육 시민이 급증하면서 동물학대, 동물유실·유기,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함에 따라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) 개정(’22.4.26)을 통해 ‘동물학대 금지’, ‘맹견 사육허가 및 기질평가’, ‘사육포기 동물 인수’, ‘실태조사’, ‘동물보호정보 수집 및 활용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음.
- 동 조례는 법 개정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‘실태조사’ 및 ‘동물보호 정보 수집 및 활용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, 이를 반영하여 동물 보호·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려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 없음.
- 세부적으로 안 제26조는 ‘반려동물’, ‘유실·유기동물’, ‘피학대동물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성 있는 관련 조사(자료·현장·시민인식 등)를 통해 효율적인 동물 보호·복지 시책의 수립·시행이 기대됨.
- 안 제27조는 「동물보호법」 제95조제4항<sup>1)</sup>을 근거로 국가동물정보시스템<sup>2)</sup>에 등록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관 부·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 정보를 수집·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.

1) 제95조(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) 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

2) 제95조(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“피학대동물”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관련정보”를 “관련 정보”로 한다.

제25조의2제4항 중 “서울특별시에”를 “시에”로 한다.

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,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실태조사)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27조(동물보호정보의 활용) 시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

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0. (생 략)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 <p>11. ~ 16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의2. <u>“피학대동물”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.</u></p> <p>11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<u>관련정보</u>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16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 <u>관련 정보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조의2(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<u>서울특별시</u>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, 동물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자등 이어야 한다.</p> <p>⑤ · ⑥ (생 략)</p>	<p>제25조의2(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시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

〈신 설〉

제26조(실태조사)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제27조(동물보호정보의 활용) 시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제26조 ~ 제29조 (생 략)

제28조 ~ 제31조 (현행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)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(실태조사)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소관부서(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)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제3기 동물복지계획<sup>3)</sup>에 따라 예산을 기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- 단, 참고자료로 유기·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 변경계약 계획을 첨부함(붙임)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    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중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3) 농림축산식품부 제3기 동물복지계획('25~'29) : 학대·유기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강화(실태조사 대상 및 지역 확대, 정기화)

## 유기·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 변경계약 계획

농림축산식품부 제3기 동물복지계획 발표 예정에 따라 유기·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의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# 계약개요

- 건 명 : 유기·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
- 계약업체 : 사단법인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
- 계약금액 : \*\*\*\*\*
- 계약기간 : 2024. 11. 29.~2025. 2. 28.

### 계약변경

- 귀책소재 : 서울시
- 변경사유
  - 농림축산식품부 제3기 동물복지계획('25~'29) 발표 예정일정('25.3월)에 따라 추가적인 실태조사 파악을 위해 준공기한 연장 필요
- 변경내용 : 준공기한 연기

계약기간	당 초	*****
	변경후	*****

### 향후계획

- 합의각서 날인 후 1차 준공기한 연기를 위한 변경계약 의뢰
- 유기·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('25.4월 중)

- 붙임 1.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.  
2. 합의각서 1부. 끝.